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4. 4. 평창군수(기획실장)
- 나. 회 부 일 자 : 2001. 4. 17
- 다. 상 정 일 자 : 2001. 4. 17 제84회 평창군의회(임시회)제1차 조례특위
(2001.4.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가. 제 안 이 유

- 평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중 보증채무 범위의 개선 및 요건완화를 통해 보증채무관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채무변제에 대한 담보권 확보시 “저당권 설정외에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담보범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 내용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5조)
- 채권자의 권리 확보 및 공익목적에 위한 사업활성화를 위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 조건을 제시(안제7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와 동법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의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 지방재정법 제10조(보증채무 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채무변제에 따른 담보권 확보시 “저당권 설정” 외에도 “보증보험증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보증채무의 변경요건을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로 구체화함과 아울러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의 기간을 명시하여 이행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음.

○ 행정규제 위원회의 규제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어 정비하는 것이나, 담보권설정시 “보증보험증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은 행정규제 취지도 좋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시기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